

환 경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시행 관련 협조 요청

-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263호) 제정·시행에 따라 '21.1.1일부터 합성수지 재질 재포장 금지가 시행되었으나, 3개월('21.1.1~3.31) 동안은 업계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재포장 위반업체에 대해 과태료 처분하지 않고 계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계도기간이 종료된 '21.4.1일부터는 '21.1.1일 이후 제조·수입한 제품의 재포장 금지 위반사례는 과태료 처분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3. 아울러, 위 고시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① 재포장 중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와 ② 중소기업에서 생산과정 중 재포장되어 제조된 제품은 '21.7.1일 이후 제조되는 제품부터 재포장 금지 규정이 적용됨을 각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구에, 관련 협회에서는 회원사에 재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1부.
 - 2. 재포장 점검 가이드라인 1부. 끝.

환 경 부 장 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자원순환과장), 부산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 대구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 인천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 광주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 대전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 울산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 경기도 지사(자원순환과장), 강원도지사(환경과장), 충청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기후환경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환경보전과장),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장(물환경과장), 경상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 경상남도 지사(환경정책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환경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환경정책과장), 관련업계, 한국 환경공단이사장,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파견직	권유진	환경사무관	홍성철	과장	전결 2021.6.21. 김고응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정책과-227				접수		
우 30103 환경부 환경부				/ http://me.go.kr		
전화번호 044-201-7348 팩스번호 044-201-7351				/ rossete@	e ao kr	/ 대국민 공개

.